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규정 신설 및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94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규정 신설(안 14조의3, 제37조의3, 제54조의2 및 제56조)	3
2.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 대상 확대 등(안 제34조, 제54조의3 및 제62조)	10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46조 및 제53조) ..	16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임오경 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2025. 1. 14.

다. 회 부 일: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책임 이행에 대한 보충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동안 전문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삭제, 제34조, 제37조의3, 제46조, 제53조, 제56조, 제62조, 제54조의2·제5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규정 신설(안 14조의3, 제37조의3, 제54조의2 및 제56조)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임(안 14조의3, 제37조의3, 제54조의2 및 제5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	<삭 제>

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 및 국가유산
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
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
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
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
-----.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
장은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
·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유산
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
다.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u>관리·제공</u>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u>구축·운영</u>	8. 제54조의2----- ----- ----- <u>관리</u> <u>· 제공</u>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u>구축·운영</u> 및 공개	9. ----- ----- ----- <u>관리</u> -----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의 정보를 관리하여 왔음¹⁾.
- 그러나, 국가유산수리 관련 대면·방문 방식의 민원처리로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전체 수리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관리 업무 등 일부 업무만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가유산수리의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온나라, 전자행정, 수리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업무가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종합시스템을 비대면·온라인 민원 서비스, 국가유산수리 계획-설계-시공-이력관리 등 국가유산수리 행정 전(全)과정의 체계적 관리 및 내·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을 제공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24.9.2.~)²⁾.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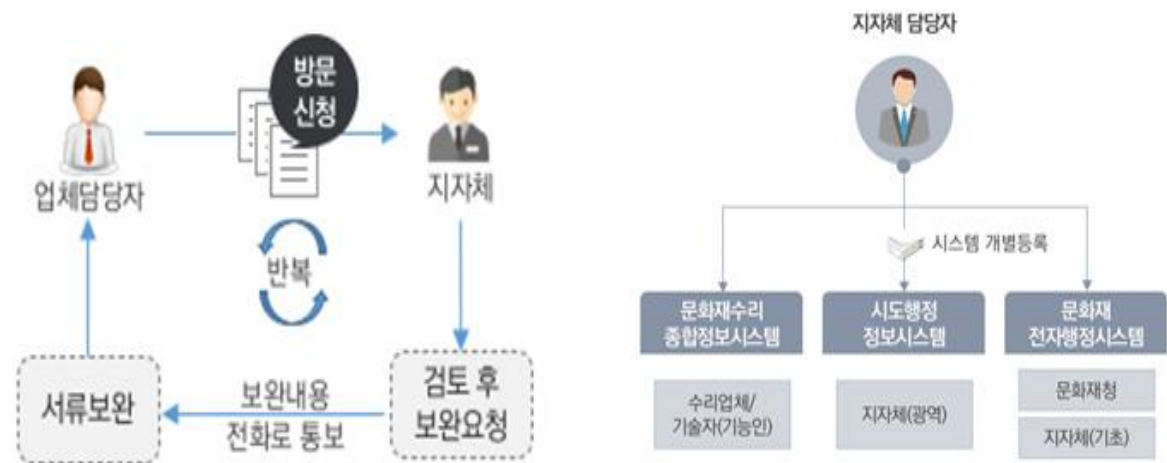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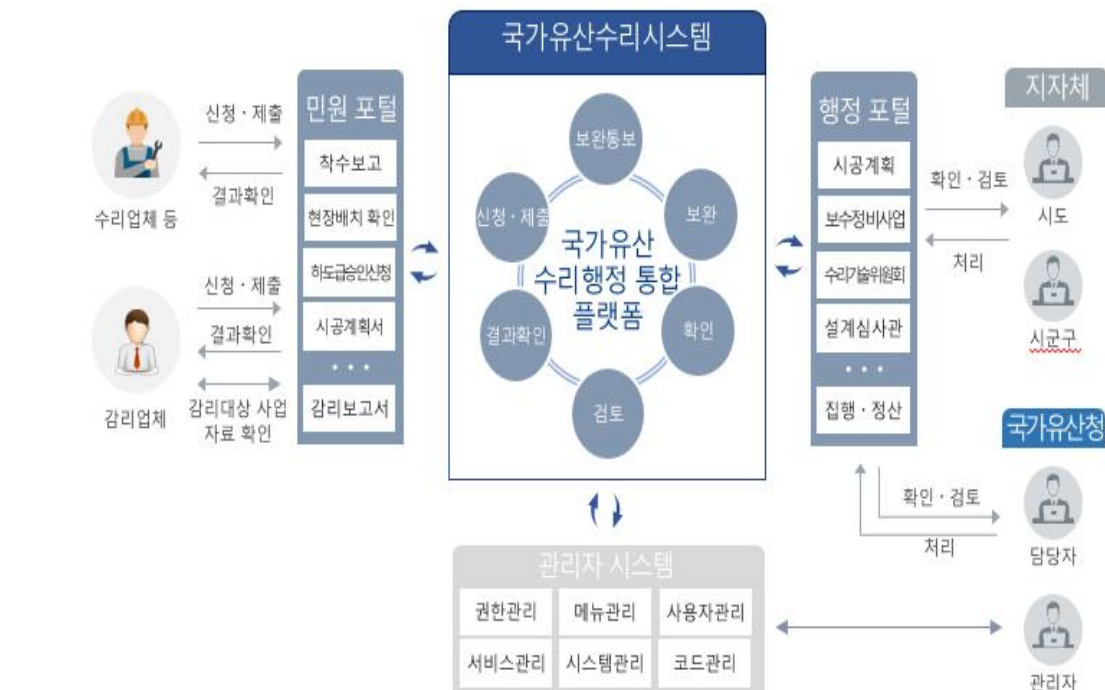
2) <https://www.khis.go.kr/>

[국가유산수리종합시스템(전)과 국가유산수리시스템(후) 비교]

○ 변경 전(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 변경 후(국가유산수리시스템)



-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실측설계·감리와 기술관리에 관한 정보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국가유산수리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행정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수리업체·감리업체 등의 민원 행정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제6장 보칙에 두고 있으나, 보칙은 일반적으로 실체규정 부분에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제3장(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제3절(국가유산수리) 등의 실체규정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2.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 대상 확대 등(안 제34조, 제54조의3 및 제62조)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54조의3 및 제6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u> 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u>국가유산수리업자등</u> 은 ----- ----- -----.
② <u>국가유산수리업자</u> 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u>국가유산수리업자등</u> 은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5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u>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u><신설></u> ② (생략)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2조(과태료)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³⁾.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정의)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런데, 국가유산수리 과정에 국가유산수리업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 대상은 국가유산수리업자만 해당이 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제외되어 있고,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⁴⁾ 의무 가입 제도가 없어 사업자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국가유산 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 대상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 수리를 원활히 수행하여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건축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 규정을 두고 있음⁵⁾.

4) · **보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 하거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두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제도

· **공제**: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

5)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한편, 안 제62조제1항제11호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입법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례들이 있으므로 과태료라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유사입법례를 보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⁶⁾, 「건축사법」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한 법률」 등은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으나, 「건축사법 시행령」은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방사업자가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일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⁷⁾.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⁸⁾.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8) 의안번호 제2208005호(박수현의원 대표발의, 2025.2.7. 제출)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46조 및 제53조)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 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5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생략)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은 <u>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u>	② ----- <u>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 또는 제4항-----</u> ----- -----.
제53조(전문교육) ① ~ ③ (생략)	제53조(전문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④ <u>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u>

<신 설>	<u>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u> <u>⑤ 제4항에 따라 받아야 할 전문교육의 종류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현행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해 신규교육(자격취득 후 1년 이내 32시간)과 정기교육(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6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⁹⁾.

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유산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고, 국가유산기술자등이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¹⁰⁾.
- 한편, 국가유산수리기능자(24개 직종, 13,134명, 2024년 8월 기준)는 국가유산수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목공, 석공, 단청 및 조경 등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높은 전문성과 자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의무적으로 국가유산수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 관계 법령, 수리현장 사례 및 기술 공유, 사고예방 안전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리 품질을 향상시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2. 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 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명령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 개정 이후 연간 약 700~800명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합격자가 전문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문 의 처
02)6788-5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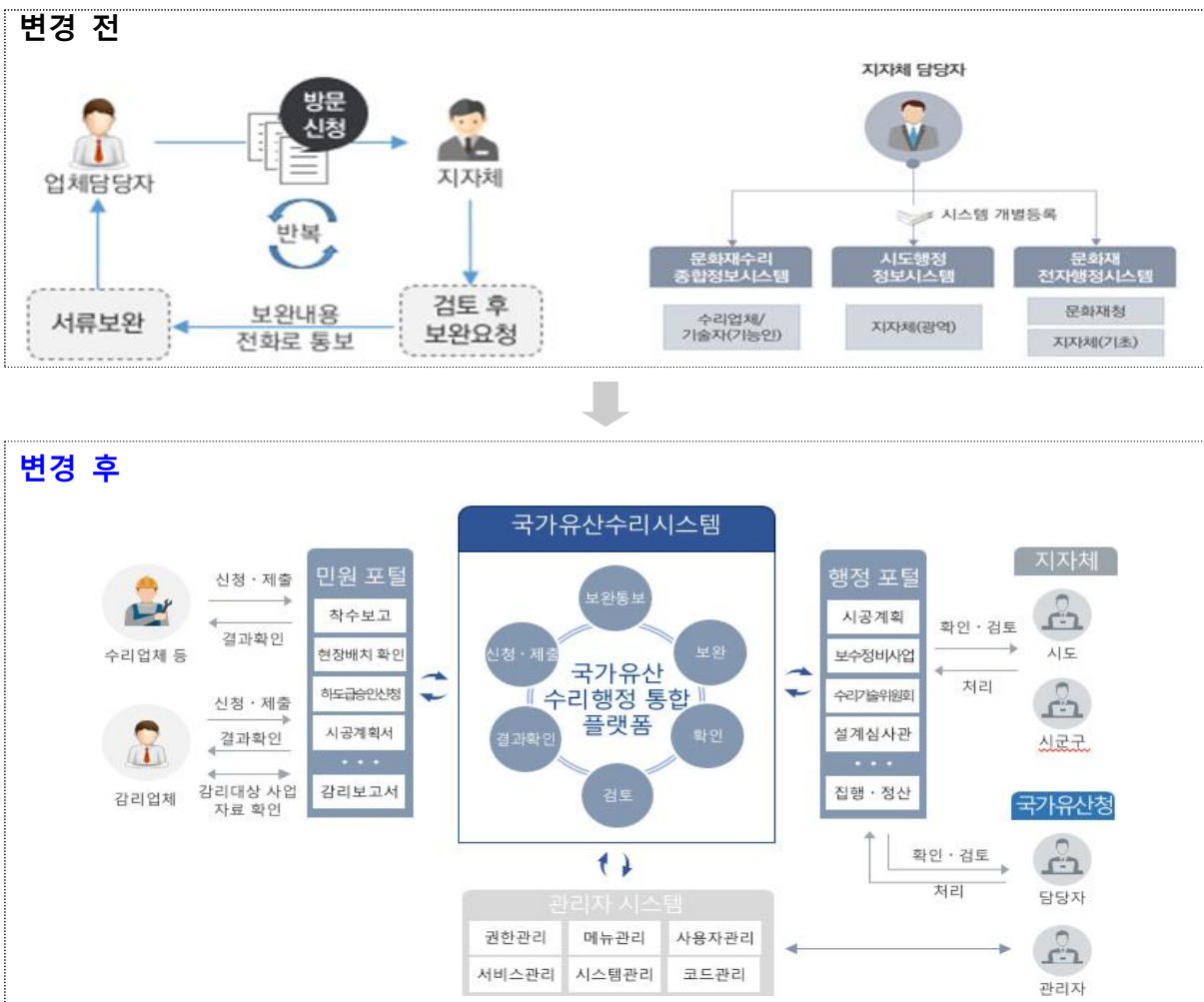
참고 1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개요

□ 사업 개요

- **(배경)**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전과 전승을 위해, 국가유산수리사업 추진 전과정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고도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국가유산 수리행정 전(全)주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대면·방문 처리하던 민원 서비스를 비대면·온라인서비스로 전환

<시스템 구성도>



<주요 개선 내용>

기존	개선
○ 대면·방문 민원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불편	○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구축 으로 대국민 편의 증진
○ 일부 업무에 국한된 시스템 기능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 통합관리 어려움	○ 국가유산수리 계획·설계·시공·이력관리 등 국가유산수리 행정 전(全)과정의 체계적 관리
○ 분산된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 시스템별(온나라, 전자행정, 수리종합정보시스템 등) 업무 처리 및 연계 부족	○ 내·외부 시스템 연계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상세 내용

-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수정비사업, 수리업자등, 기술자·기능자 등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수리포함)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전자행정시스템: 국고·보수정비{보수정비(진행)}, 수리업자, 수리기술(능)자, 궁능보수정비관리, 궁능보수정비이력관리 기능 이관
 - 시도새울시스템: 수리업자 기능 이관
- **(포털확대)** 행정처리시간 단축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인(수리업자등 기술자, 기능자 등)이 직접 국가유산수리 행정업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포털 구축
 - 민원인이 서류제출·행정인 시스템 입력하던 구조에서 민원포털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행정인이 검토·확인하는 구조로 변경
 - 행정업무를 종이문서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
- **(연계서비스)**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의 유기적 활용으로 수리 행정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 내부: 차세대 전자행정시스템의 국가유산 및 예산 등 정보 활용
 - 외부: 나라장터(조달청) 계약정보 및 온-나라(행정안전부)의 연계기안 활용
- **(감리고도화)** 감리기능 고도화로 감리업무 효율적 수행 및 가치정보 축적 기능 강화
 - 각종 서류의 체계적 관리 및 감리보고서 자동생성
 - 지정국가유산 해체공사 상세정보 등 가치정보 DB화

- **(편의향상)**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현장 근무자의 업무 편의성 향상
 - 작업일지, 감리일지 등 각종 자료 현장 입력 및 제출 가능
 - **(경력관리)** 시스템에 축적되는 기술자·기능자에 대한 사업참여 정보를 활용한 체계적 경력 관리 및 수리기술자 현장배치 검증 기능 제공
- * 1997년부터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조각공(목조각공, 석조각공), 보존과학공 (훈증공, 보존처리공)으로 세분화되었음.

참고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현황

(2024년 8월 기준, 단위 : 개)

종 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 공	드 잡 이 공	번 와 와 공	제 작 와 공	한 식 미 장 공	철 물 공	조각공	
	대목수	소목수	가공석공	쌓기석공							목조각공	석조각공
개	1,667	320	507	947	1,061	509	834	65	711	92	184	205
철 공	도 금 공	표 구 공	조 경 공	세 척 공	보존과학공		식 물 보 호 공	실 측 설 계 사 보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공	모 사 공	온 돌 공	계
					훈증공	보존처리공						
952	240	227	934	489	114	1,325	416	788	58	246	243	13,134

* 1997년부터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조각공(목조각공, 석조각공), 보존과학공 (훈증공, 보존처리공)으로 세분화되었음.